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19
----------	-------

발의연월일 : 2025. 12. 9.

발 의 자 : 오세희 · 이훈기 · 정진욱
송재봉 · 김우영 · 박지원
민병덕 · 김종양 · 구자근
김기웅 · 신동욱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며, 과징금 및 벌칙의 부과 대상에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행위가 특정 제품에 한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됨에 따라, 위반하지 아니한 제품까지 공공조달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일시적인 수요 폭증이나 부품 공급 차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어 중소기업의 존속이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하되, 조사 결과 2개 이상의 제품에서 위반이 적발되거나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재차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이 경우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를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납품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호 및 제4호에”를 “제4호 및 제5호에”로, “및 제5호에”를 “· 제3호 및 제6호에”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를 “제2항제3호에”로, “모든”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제2항제5호에”를 “제2항제6호에”로 한다.

4.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동시에 2개 이상의 제품이 제2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재차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동시에 2개 이상의 제품이 제2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재차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4.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제11조의2제1항제2호 중 “및 제3호에”를 “· 제4호 및 제11조제3항 단서에”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2.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한 직접생산 이행 여부 조사결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u>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u>	3. ----- ----- <u>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납품한 경우</u>
<u><신 설></u>	4. <u>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u>

4. · 5. (생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략)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고, 그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

5. ·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③ -----
-----제4호 및 제5호에-----

-----· 제3호 및 제6
호에-----

-----· 다만,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동시에 2개 이
상의 제품이 제2항제3호에 해
당하거나 1년 이내에 재차 제2
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
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
소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
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
인신청을 제한한다.

1. 2. (생략)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단서 신설>

<신설>

4.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3개월 이내

⑥ ~ ⑧ (생략)

제11조의2(과징금) ① 중소벤처기

-----.

1. 2. (현행과 같음)

3. 제2항제3호에-----
-----해당-----

--. 다만,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동시에 2개 이상의 제품
이 제2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재차 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4.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5. 제2항제6호에-----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과징금) ① -----

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 ② · ③ (생 략) 제35조(벌칙) ① (생 략) ②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u><신 설></u> ③ (생 략)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제4호 및 제11조제3항 단서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2.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 ③ (현행과 같음)
---	---